

## < 일임형ISA 약관 개정대비표 >

1. 대상 약관 :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3.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 1 조(약관의 적용)</b> ① 이 약관은 고객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u>」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p>	<p><b>제 1 조(약관의 적용)</b> ① 이 약관은 고객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u>」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p>	<p>용어 정비</p>
<p><b>제 2 조(용어의 정의)</b>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1 명당 1 개의 계좌만 <u>개설</u>할 것 (신설)</p>	<p><b>제 2 조(용어의 정의)</b>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u>자본시장법</u>'),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1 명당 1 개의 계좌만 <u>보유</u>할 것</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u></p>	<p>용어 정비</p> <p>개정 세법 반영</p> <p>개정 세법 반영</p>

<p>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다. 계약기간이 5년일 것  라.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p> <p>(신설)</p>	<p>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라.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마.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p> <p><u>※2천만원 x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u></p>	<p>번호 순연  개정 세법 반영  개정 세법 반영</p>
<p>2~4. (생략)</p> <p>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2~4. (좌동)</p> <p>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u>한국금융투자협회에</u>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u>재산</u>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용어 정비  용어 정비</p>
<p>6~7. (생략)</p> <p>8.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p> <p>9. (생략)</p>	<p>6~7. (좌동)</p> <p>8.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u>자본시장법</u>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p> <p>9. (좌동)</p>	<p>용어 정비</p>
<p><b>제 3 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p>	<p><b>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거주자가</u>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u>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u>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개정 세법 반영</p>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어민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  
 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삭제)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개정 세법 반영

개정 세법 반영

개정 세법 반영

개정 세법 반영

개정 세법 반영

개정 세법 반영

	<p><u>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 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계좌의 계약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추징된다.</u></p>	
<p><b>제4조~제5조</b> (생략)</p> <p><b>제 6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b>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p> <p>② 계약기간은 <u>제 2 조제 1 호다목에 따라 5 년으로 한다.</u></p> <p>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u>1 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신설)</p>	<p><b>제4조~제5조</b> (좌동)</p> <p><b>제 6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b>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p> <p>② 계약기간은 <u>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신청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u>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④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개정 세법 반영 및 계약기간 명시</p> <p>개정 세법 반영 및 연장안내 명시</p> <p>연장기간 명시</p>
<p><b>제7조~9조</b> (생략)</p> <p><b>제 10 조(중도해지)</b> ① 고객이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 11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u></p>	<p><b>제7조~9조</b> (좌동)</p> <p><b>제 10 조(중도해지)</b> ① 고객이 <u>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u>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 11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u>경우에 고객은</u>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u>세액을 추징받으며,</u></p>	<p>개정 세법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u></p> <p>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라. 제 3 조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농어민</p> <p>2. 제 1 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p> <p>② 고객이 <u>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납입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u></p> <p>③ 고객이 <u>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④~⑤ (생략)</p> <p><b>제11조~제13조</b> (생략)</p> <p><b>제 14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b>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p>	<p style="text-align: center;"><u>해당 소득은 추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u></p> <p>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② 고객이 <u>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u>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③ 고객이 <u>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u>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④~⑤ (좌동)</p> <p><b>제11조~제13조</b> (좌동)</p> <p><b>제 14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b>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세법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세법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세법 반영</p>
--	---	---

<p>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li> <li>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li> <li>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li> <li>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li> <li>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li> <li>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li> <li>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u>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u>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u>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발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li> <li>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li> <li>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li> <li>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li> <li>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li> <li>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li> <li>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li> </ol> <p><u>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u></p>	<p>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2항 개정 반영(2019.01.15)</p> <p>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3항 신설 반영(2019.01.15)</p>
<p><b>제 15 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b> ① 제 2 조제 1 호다목에 따른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p> <p>② (생략)</p> <p><b>제16조~제22조</b> (생략)</p>	<p><b>제 15 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b> ① <u>제 6 조에 따른 계약기간이</u>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u>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u>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p> <p>② (좌동)</p> <p><b>제16조~제22조</b> (좌동)</p>	<p>개정 세법 반영</p>

**[별지]**

**1. 랩 서비스 명 :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구분	세부내용 (원 / %)
최저가입(계약)금액	10만원
수수료 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후취) ( )는 온라인 수수료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 연 0.1%(0.1%)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2%(0.2%)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4%(0.3%)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5%(0.4%)
수수료 납부일	매 분기 다음달 5영업일 이내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1.분기말 및 (중도)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2.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2. 모델포트폴리오**

모델포트폴리오명	적합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안정형	[국채 등 채권펀드 및 안정적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 (포커스/밸런스)	안정추구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 (포커스/밸런스)	위험중립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 (포커스/밸런스)	적극투자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 \* 포커스/밸런스의 차이는 국내주식형 펀드 편입 여부
- \* 채권형은 국내채권형/해외채권형 펀드, 대안/혼합형은 절대수익추구형/혼합형/원자재형/구조화형 펀드, 유동성은 MMF/RP/예탁금 등
- \* MP의 자산배분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지]**

**1. 랩 서비스 명 : 하나 일임형 ISA**

구분	세부내용 (원 / %)
최저가입(계약)금액	10만원
수수료 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후취) ( )는 온라인 수수료	하나 일임형 ISA 최저위험 : 연 0.1%(0.1%)
	하나 일임형 ISA 저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2%(0.2%)
	하나 일임형 ISA 중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4%(0.3%) 하나 일임형 ISA 고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5%(0.4%)
수수료 납부일	매 분기 다음달 5영업일 이내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1.분기말 및 (중도)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2.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2. 모델포트폴리오**

모델포트폴리오명	적합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하나 일임형 ISA 최저위험	안정형	[국채 등 채권펀드 및 안정적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
하나 일임형 ISA 저위험 (포커스/밸런스)	안정추구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하나 일임형 ISA 중위험 (포커스/밸런스)	위험중립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하나 일임형 ISA 고위험 (포커스/밸런스)	적극투자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등 다양한 펀드에 주로 투자]

- \* 포커스/밸런스의 차이는 국내주식형 펀드 편입 여부
- \* 채권형은 국내채권형/해외채권형 펀드, 대안/혼합형은 절대수익추구형/혼합형/원자재형/구조화형 펀드, 유동성은 MMF/RP/예탁금 등
- \* MP의 자산배분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델포트폴리오  
명칭 변경 반영